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20일	
신청인	업소명(상호)			①영업의 종류		
	영업(허가·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공장(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내용	제품명			②식품의 유형		
	총 내용량			1회 섭취참고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다만,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증 사본(해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만원
------	--	------------

작성 방법

1. ①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

2. ②식품의 유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